

관광대학원계약학과운영에관한내규

제정 : 2016. 3. 1.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「동법시행령」 제8조·제9조 및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제3조에 따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(이하 “산업체 등”이라 한다.) 등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(이하 “계약학과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,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(채용조건형)

2.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(재교육형)

제3조(교과과정과 이수학점) ①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기존 동일 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본교에 동일 학과가 없거나 계약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, 편제와 학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②계약학과의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, 당해 계약학과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자격 및 선발) ①계약학과 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관광대학원내규 제4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산업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

②계약학과의 입학 또는 편입학 선발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광대학원내규에 따른다.

제5조(운영경비 및 납부금) ①제2조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
②제2조 제2호에 의한 계약학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6조(수업연한) 본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제20조 내지 제 21조에 따른다.

제7조(설치·운영기간)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본교와 산업체 간에 체결된 「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계약서」에 따른다.

제8조(졸업요건) 계약학과를 졸업·수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관광대학원 내규를 따른다.

제9조(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관련 학과(전공)에 소속시키며, 학생의 학업이수, 졸업요건, 납입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소속된 학과(전공)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.

제10조(준용규정)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및 관광대학원내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.